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가 모바일신분증으로 등기의무자등을 확인하고 확인조서를 작성할 경우 신분확인서 대신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사본저장 시스템”에서 출력한 모바일 신분증 사본을 조서에 첨부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종래의 신분확인서 양식을 삭제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39호 양식(신분확인서)을 삭제함

3.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 양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양 식 목 록

양식 번호	명 칭	관 련 법 령	비 고
1	착오 또는 유류의 통지서	법 제32조 제1항	
2	경정등기통지서	법 제32조 제3항	
3	토지표시변경 직권등기의 통지서	법 제36조 제2항	
4	각하통지서	법 제37조 제2항 및 제42조 제2항	
5	건물멸실등기 통지서	법 제45조 제1항	
6	(삭 제)	(삭 제)	
7	(삭 제)	(삭 제)	
8	(삭 제)	(삭 제)	
9	직권 말소등기 통지서	법 제92조 제2항	
10	말소등기 통지서	법 제94조 제3항	
11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통지서	법 제103조 제3항	
12	관할지정에 의한 등기 통지서	규칙 제5조 제5항	
13	참여조서	규칙 제8조	
14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1호	
15	기타문서 접수장	규칙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 제2호	
16	결정원본편철장	규칙 제21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1항 제3호	
17	이의신청서류편철장	규칙 제21조 제1항 제4호, 제25조 제1항 제4호	
18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규칙 제21조 제1항 제6호, 제25조 제1항 제6호	
19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규칙 제21조 제1항 제7호, 제25조 제1항 제7호	
20	각종 통지부	규칙 제21조 제1항 제8호, 제25조 제1항 제8호	
21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규칙 제21조 제1항 제9호, 제25조 제1항 제9호	
22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규칙 제21조 제1항 제10호, 제25조 제1항 제10호	
23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	규칙 제26조 제1항	
24	(삭 제)	(삭 제)	
24-1	등기기록 열람신청서	규칙 제26조 제1항	
24-2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신청서	규칙 제26조 제1항	

25	등록면허세 등 수령정보	규칙 제45조 제2항	
26	접수증	규칙 제65조 제3항	
27	(삭 제)	(삭 제)	
28	(삭 제)	(삭 제)	
29	(삭 제)	(삭 제)	
30	확인조서	규칙 제111조 제1항	
30-1	확인조서(법인)	규칙 제111조 제1항	
31	직권말소 대상 통지서	규칙 제117조	
32	토지수용으로 인한 등기말소 통지서	규칙 제157조 제1항	
33	(삭 제)	(삭 제)	
34	대위신청에 의한 신청서편철필 통지서	규칙 부칙 제3조	
35	확인서(공증서)에 의한 신청서편철필 통지서	규칙 부칙 제3조	
36	등기필증교부 통지서	규칙 부칙 제3조	
37	신청서 편철부	규칙 부칙 제3조	
38	등기부책 보존부	규칙 부칙 제3조	
39	(삭 제)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 락 처	(02) 3480-6041